

치아손상의 분류에 따른 진단명 및 치료계획

손상(Injury)이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자에 의하여 인체의 기능장애 또는 형태파괴가 초래된 것을 말하는데, 특히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손상중의 하나가 치아손상이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의 다양화, 운동경기의 대중화 또는 각종 분쟁사건등에 의해 치아손상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의 과오가 차후 법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아손상에 대해 통법의 병력청취, 제반 임상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등을 유효적절히 시행하여 얻은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계획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사료된다.

1. 치관균열(crown infraction)

국제질병분류번호 : 873. 60

특징 : 치질(齒質)의 탈락이 수반되지 않은 채 법랑질에 한한 치관의 불완전한 파절 혹은 균열(그림 1 참조).

진단법 : 치아의 수직장축에 평행하게 빛을 비추어 보으로써 균열선을 관찰할 수 있다(indirect illumination).

치료계획 :

1. 영구치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으나 치수생활력검사를 시행해봄이 바람직하다(특히 손상 6~8주후 재차 시행해봄이 좋다).

2. 유치

역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으나 손상 6주 후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해봄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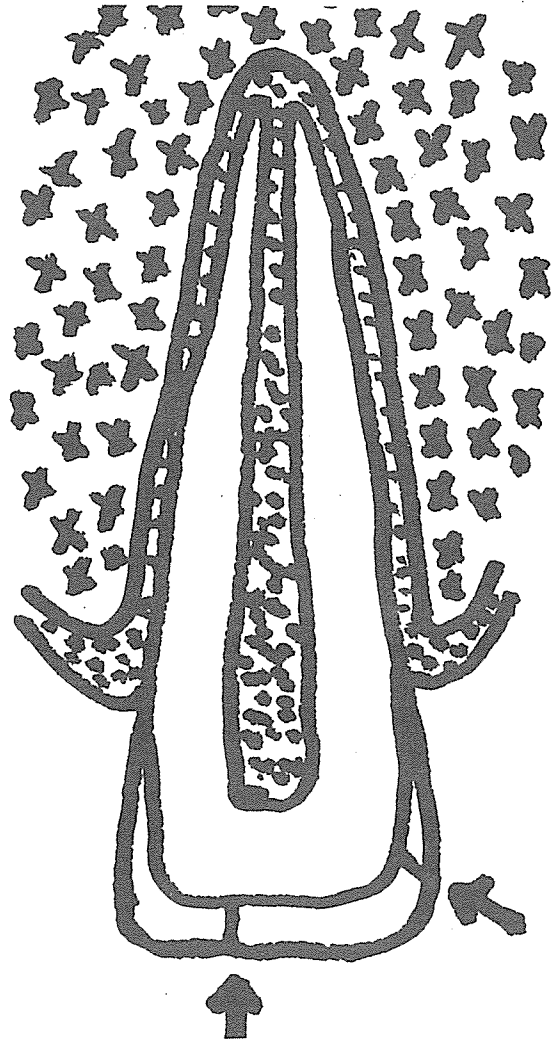


그림 1.

정우치과기공소
Jung Woo Dental Lab.

代表 崔 海 明

전화 765-0606, 743-6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40번지